

광주지방법원 2024. 10. 23 선고 2024가단6170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주식회사 B

2. C

변론 종결2024. 9. 25.

판결 선고2024. 10. 23.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나. 2021. 10. 9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 판결)

판사이재석

별지